

---

고삼용담 등 4개지구 농촌용수이용체계재편사업  
전략 환경영향평가  
평가항목 등의 결정내용 공개

---

2024. 04.

## 제1장 계획의 목적 및 개요

### 1.1 계획의 수립 배경 및 목적

- 지속적인 농업분야에 대한 용수개발 투자에도 불구하고 가뭄에 안전한 용수 공급 기반은 미흡한 실정으로 가뭄에 대한 대응능력이 매우 취약한 형편임
- 기존 농촌용수 공급시설로는 가뭄시 적기에 용수를 충분히 공급하는데 한계가 있고 가뭄상습지에 저수급량이 적어 주변의 농작물 경작지에 용수공급을 원활하게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
- 이에 따라, 가뭄상습지역에 저수지, 양수장, 용수로 등 수리시설을 설치하여 농업용수를 효율적으로 배분, 활용하여 가뭄상습지역(수리불안전답)에 안정적인 농업용수 공급 체계를 유지함은 물론 집단민원을 해결하고 작부 체계를 개선하여 농업인 소득 증진에 기여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

### 1.2 계획의 개요

#### 1.2.1 전략환경영향평가 실시근거

- 본 계획은 「농어촌정비법」 제8조에 따른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기본계획으로 「환경영향평가법」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제2항 관련 [별표2]에 따라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에 해당함

[표 1.2-1] 전략환경영향평가 실시근거

구 분	개발기본계획의 종류	협의 요청시기
파. 특정지역의 개발	2) 「농어촌정비법」 제8조에 따른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기본계획	계획의 확정 전

자료 : 「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」 [별표2]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 및 협의 요청시기, 환경부

#### 1.2.2 전략환경영향평가 평가준비서 작성근거

- 「환경영향평가법」 제11조(평가 항목·범위 등의 결정)에 의거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기 전 환경영향평가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, 환경보전목표, 토지이용구상안, 대안, 평가항목·범위·방법 등을 결정하기 위하여 평가준비서를 작성함

### 1.2.3 추진경위 및 향후 추진계획

#### 가. 추진경위

- 2023. 09. : 전략환경영향평가 착수
- 2024. 03. : 전략환경영향평가 평가준비서 제출
- 2024. 03. 18 ~ 04. 08 : 환경영향평가협의회 구성 및 심의

#### 나. 향후 추진계획

- 2023. 04. : 전략환경영향평가 평가항목·범위 등의 결정내용 공개
- 2023. 05. : 전략환경영향평가(초안) 제출
- 2024. 05.~06. : 공고·공람 및 주민설명회, 관계기관 의견수렴
- 2024. 07. :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 요청

## 1.3 계획의 내용

### 1.3.1 계획의 비전, 목표, 추진전략

#### 가. 계획의 비전 및 목표

- 안정적 농업용수 확보를 통한 안전·편의 영농에 기여
- 시설 용수관로와 연결하여 효율적 물관리
- 영농편의 제공, 농업생산성 증대를 통한 지역주민 소득증대, 복리 증진 등에 기여

#### 나. 계획의 추진전략

- 용수개발에 따른 관개개선, 환경용수 확보 및 홍수 예방
- 개인관정, 하천수 운반 등에 소요되는 농민의 경제적 부담 완화
- 천층수 부족에 따른 암반층 개발 및 심층수 오염 등의 지하수 난개발 방지
- 생산기반확충, 식량 증산 및 지역민 생활안정에 기여

### 1.3.2 계획의 주요 내용

가. 계획명 : 고삼용담 등 4개지구 농촌용수이용체계재편사업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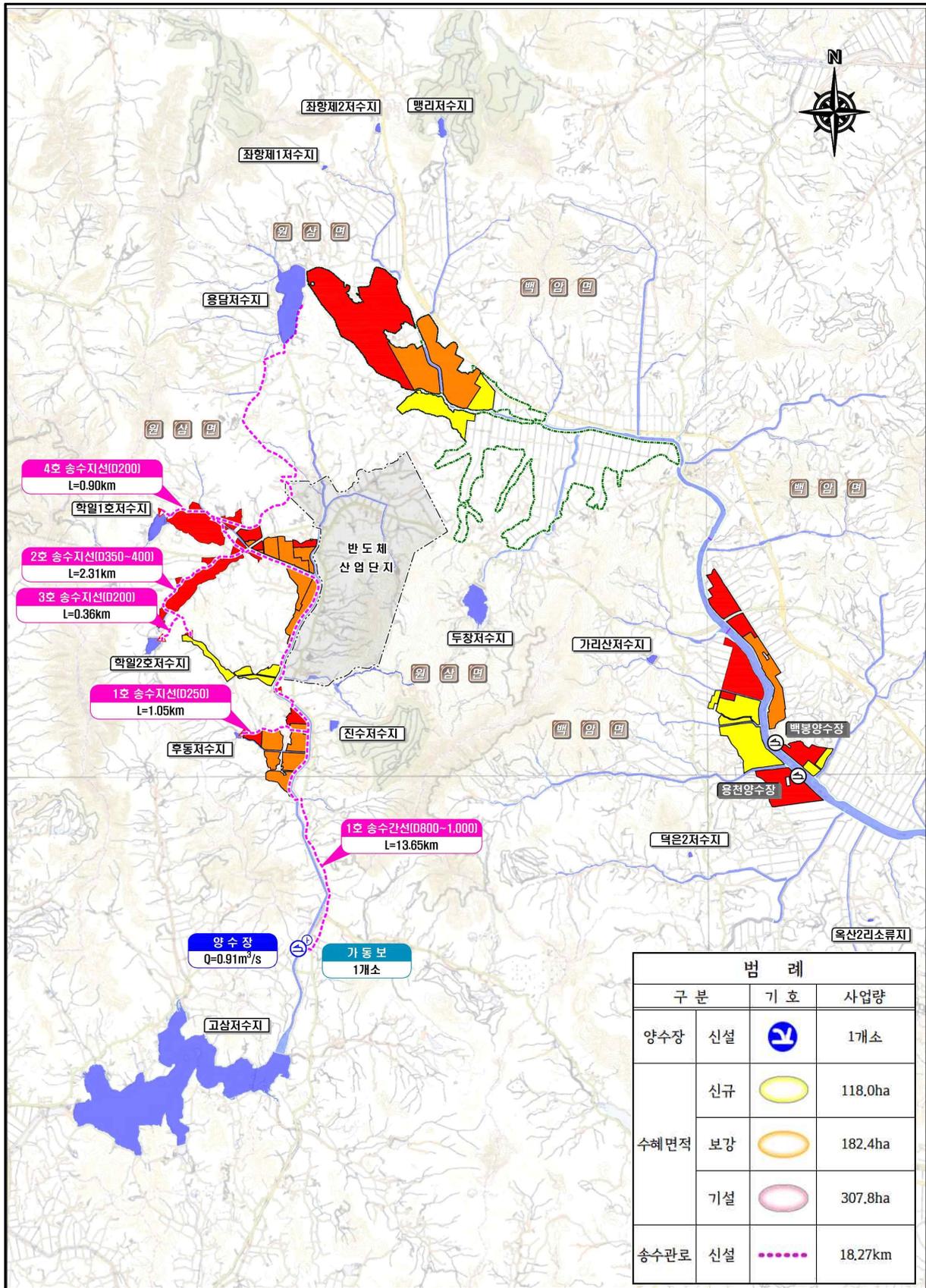
나. 계획기간 : 2023년 ~ 2024년

다. 사업시행기관 : 한국농어촌공사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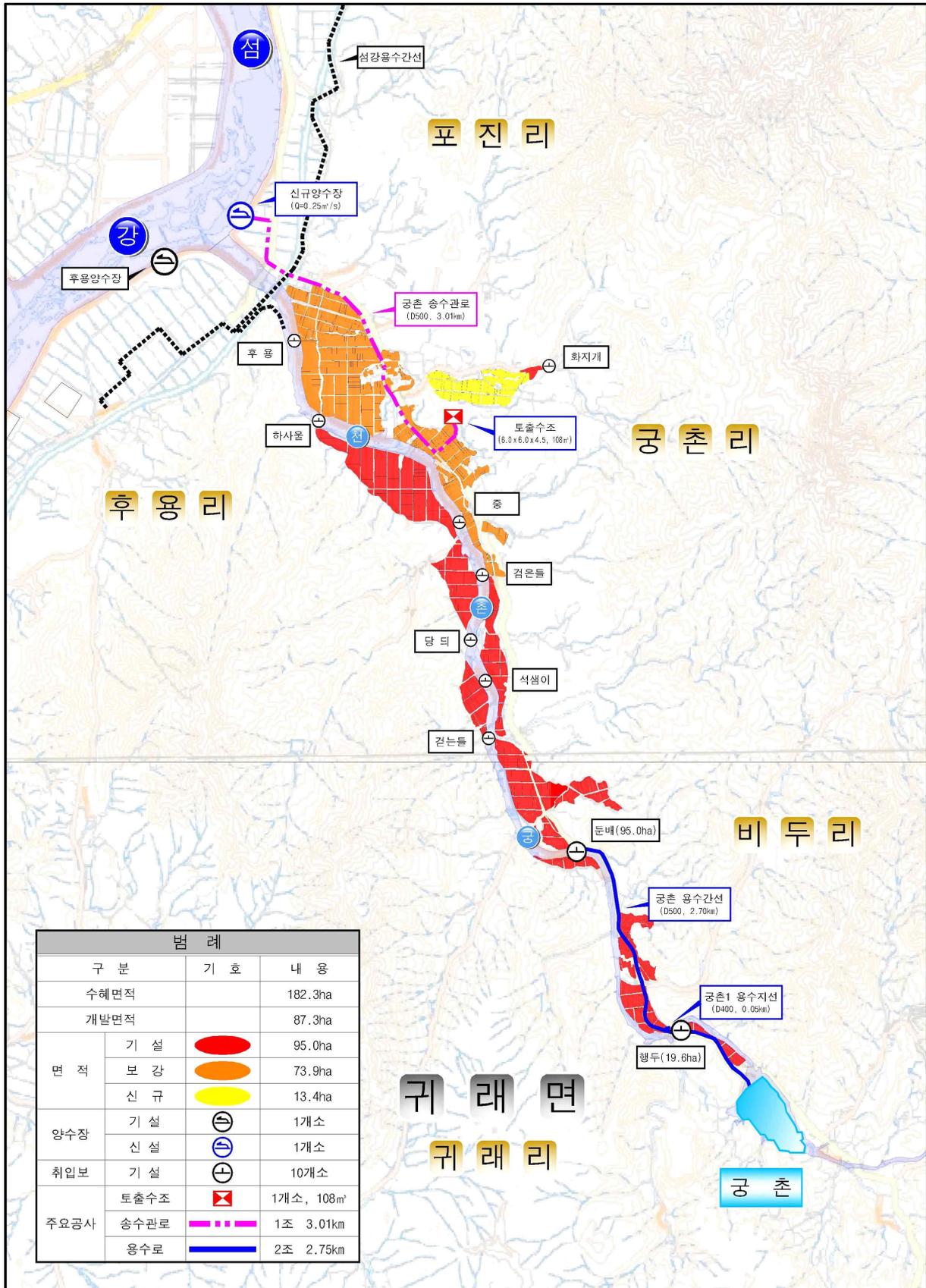
라. 기본계획 수립기관 : 농림축산식품부

마. 계획지구 위치 및 주요 시설계획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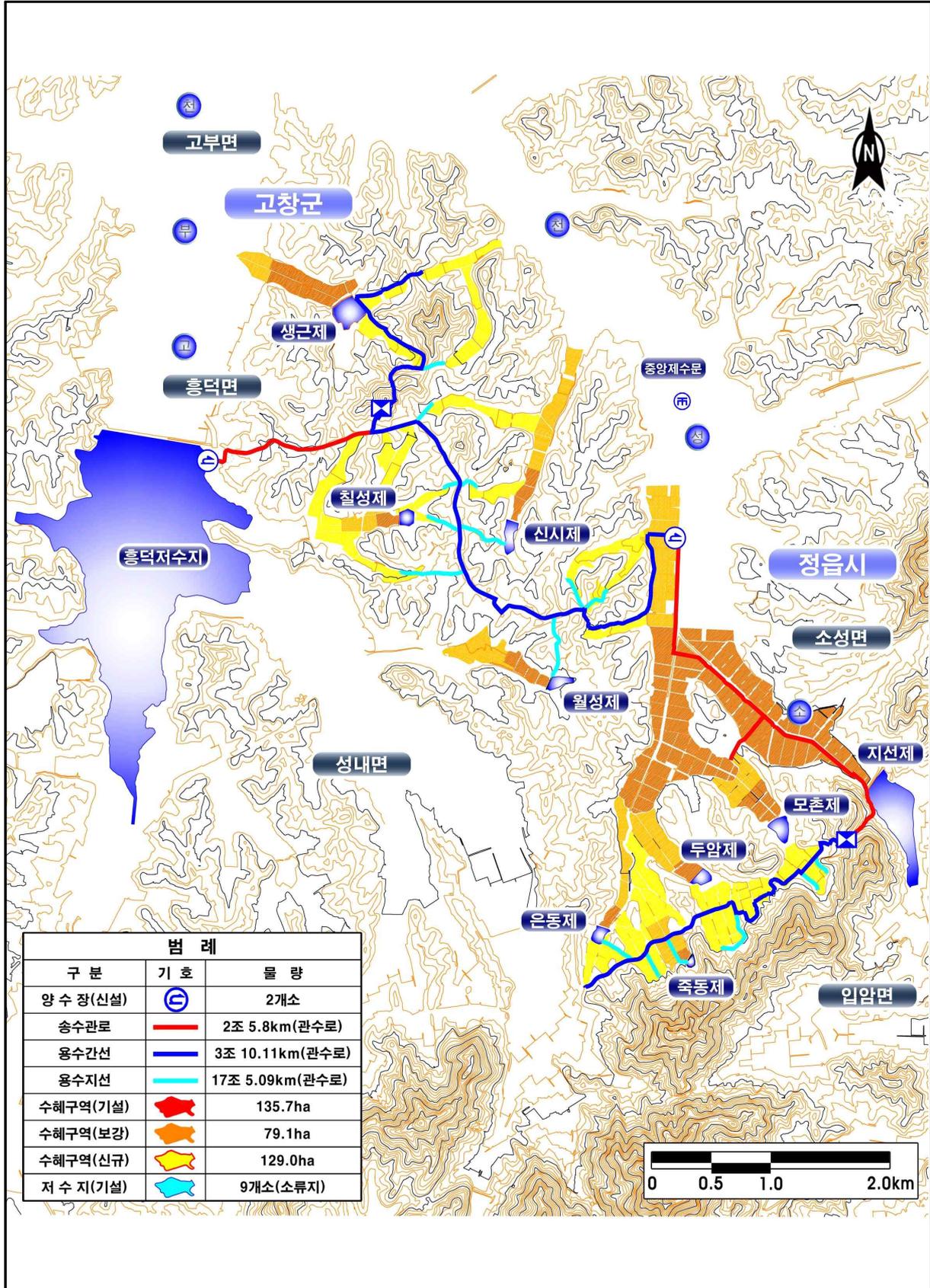
사업명	지구명	위 치	계획내용
농촌용수 이용체계 재편사업	고삼용담 지구	경기도 안성시 고삼면, 보개면, 용인특례시 처인구 원삼면 일원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수혜면적</li> <li>- 신규 118.0ha, 보강 182.4ha, 기설 307.8ha</li> <li>○ 양수장 1개소(신설)</li> <li>○ 송수관로 5조(L=18.27km)</li> </ul>
	원주지구	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문막읍 일원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수혜면적</li> <li>- 신규 13.4ha, 보강 73.9ha, 기설 95.0ha</li> <li>○ 양수장 1개소(신설)</li> <li>○ 토출수조 1개소(신설)</li> <li>○ 송수관로 1조(L=3.01km)</li> <li>○ 용수로 2조(L=2.75km)</li> </ul>
	애당지구	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성내면, 정읍시 소성면, 입암면 일원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수혜면적</li> <li>- 신규 129.0ha, 보강 79.0ha, 기설 135.7ha</li> <li>○ 양수장 2개소(신설)</li> <li>○ 토출수조 2개소(신설)</li> <li>○ 송수관로 2조(L=5.8km)</li> <li>○ 용수관로(용수간선, 용수지선) 20조(L=15.2km)</li> </ul>
	주남지구	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동읍, 대산면, 김해시 진영읍 일원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수혜면적</li> <li>- 보강 779.0ha, 기설 818.0ha</li> <li>○ 양수장 1개소(신설)</li> <li>○ 토출수조 7개소(확장)</li> <li>○ 송수관로 4조(L=14.16km)</li> </ul>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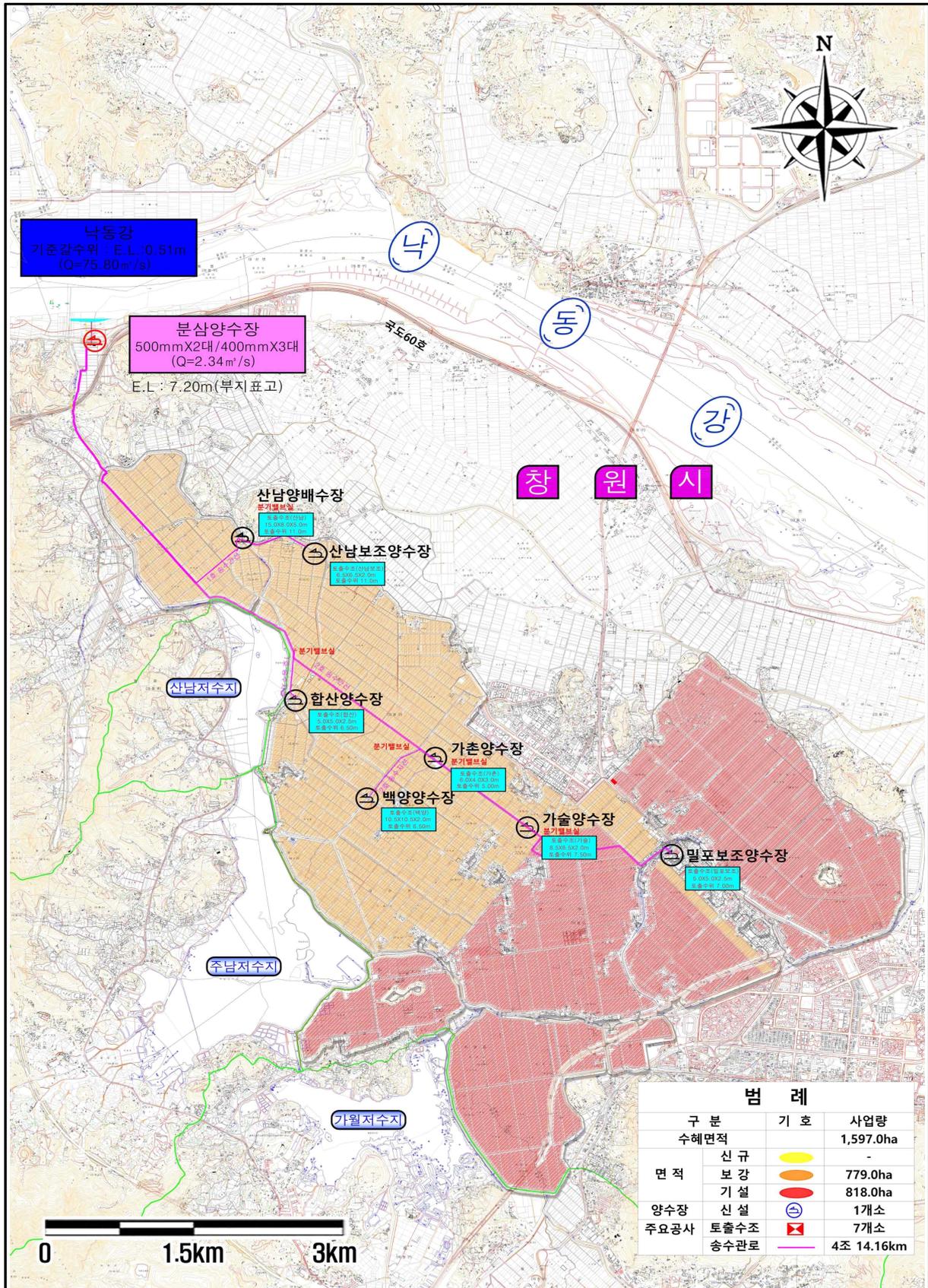
(그림 1-1) 계획지구 위치도(고삼용담지구)



(그림 1-2) 계획지구 위치도(원주지구)



(그림 1-3) 계획지구 위치도(애당지구)



(그림 1-4) 계획지구 위치도(주남지구)

## 제2장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개요

### 2.1 법적근거

- 「환경영향평가법」 제8조(환경영향평가 협의회)
- 「환경영향평가법」 제4조(환경영향평가협의회 구성), 제5조(환경영향평가협의회의 운영)
- 「환경영향평가법」 제11조(평가·항목·범위 등의 결정)

### 2.2 환경영향평가협의회 개요

- 심의방법 : 서면심의
- 심의일자 : 2024년 3월 5일 ~ 4월 8일
- 심의위원장 : 농림축산식품부 농업기반과장
- 심의위원 : 협의기관(환경부 환경영향평가과) 등 24명

[표 2.2-1]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위원

연번	구분	대상지구	소 속	직 위	성 명	비 고
-	위원장	공 통	농림축산식품부 농업기반과	과장	이 ○ ○	계획수립기관
1	위 원	공 통	농림축산식품부 농업기반과	서기관	김 ○ ○	계획수립기관
2	〃	공 통	환경부 환경영향평가과	사무관	김 ○ ○	협의기관
3	〃	공 통	한국환경연구원 환경평가본부	연구위원	이 ○ ○	협의기관 추천 전문가
4	〃	공 통	(주)서영엔지니어링	전문	최 ○ ○	계획수립기관 위촉 전문가
5	〃	고삼용담	한강유역환경청 환경평가과	주무관	민 ○ ○	지방환경관서
	〃	원 주	원주지방환경청 환경평가과	주무관	이 ○ ○	
	〃	애 당	전북지방환경청 환경평가과	과장	허 ○ ○	
	〃	주 남	낙동강유역환경청 환경평가과	과장	오 ○ ○	

[표 2.2-1] 계속

연번	구분	대상지구	소 속	직 위	성 명	비 고
6	위 원	고삼용담	용인시 환경위생사업소 환경과	주무관	송 ○ ○	관할 지자체
	〃		안성시 도시경제국 건설관리과	팀 장	김 ○ ○	
	〃	원 주	원주시 환경국 환경과	과장	이 ○ ○	
	〃	애 당	정읍시 복지환경국 환경정책과	과장	백 ○ ○	
	〃		고창군 자치행정국 환경위생과	과장	강 ○ ○	
	〃	주 남	창원시 기후환경국 환경정책과	주 사	이 ○ ○	
	〃		김해시 환경국 환경정책과	과장	이 ○ ○	
7	위 원	고삼용담	경기도 용인특례시 원삼면	사암4리 이 장	이 ○ ○	주민대표
	〃		경기도 안성시 고삼면	이장단 협의회장	노 ○ ○	
	〃	원 주	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문막읍	이장단 협의회장	공 ○ ○	
	〃	애 당	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소성면	이장단 협의회장	김 ○ ○	
	〃		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성내면	관동마을 이 장	이 ○ ○	
	〃	주 남	경상남도 창원시 대산면	주남마을 이 장	곽 ○ ○	
	〃		경상남도 김해시 진영읍	진영읍 주민자치회장	이 ○ ○	
8	〃	공 통	길토래비자연학교	팀 장	정 ○ ○	시민단체

## 제3장 환경보전목표 설정

### 3.1 환경보전목표의 설정

- 「환경영향평가법」 제5조(환경보전목표의 설정 등)에 의거하여 농촌용수이용체계재편 사업의 평가항목별 환경성이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환경보전목표를 설정하고, 양수장, 송수관로 등에 대한 입지의 적정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기 위한 평가지표(요소)를 설정함

[표 3.1-1] 환경보전목표(평가지표) 및 평가방안

평가 분야 및 항목	환경보전목표(평가지표) 설정	설정 사유
I. 계획의 적정성		
가. 상위 계획 및 관련 계획과의 연계성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상위·관련 계획과의 부합성              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제5차 국토종합계획</li> <li>- 농어촌용수 이용 합리화 계획</li> <li>- 농업·농촌 및 식품 산업 발전 계획</li> <li>- 제5차 국가환경종합계획</li> <li>- 가뭄종합대책</li> </ul> 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농어촌용수이용 합리화 계획과의 부합성 및 연계성 검토</li> <li>○ 농업용수 공급기반 부족 및 가뭄에 대한 대응능력, 가뭄발생 및 피해 현황, 물 부족량 등 검토</li> </ul>
나. 대안 설정·분석의 적정성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대안 설정 및 검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계획비교, 수단·방법 비교, 입지비교</li> </ul> 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대안별 계획 및 입지를 비교하여 용수확보의 용이성, 환경훼손이 적은 대안 검토</li> </ul>
II. 입지의 타당성		
가. 자연환경의 보전		
1. 생물다양성·서식지 보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중요 생물종 보전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법정보호종 및 보전가치가 있는 생물종의 서식처에 미치는 영향 평가 필요              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보호가치가 있는 생물 및 서식처에 직·간접적으로 미치는 영향</li> </ul> </li> </ul>
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생물다양성 우수지역 보전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보호지역(철새도래지 등), 종다양성이 높고 우수한 지역 및 동물의 이동이 필요한 서식지 등 생물다양성 향상이 요구되는 지역의 보전 등 적정성 평가 필요</li> </ul>
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생태자연도 1등급권역 보전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1등급권역 및 별도관리지역 분포시 보전을 강구하여 생물다양성 및 서식지에 대한 영향 최소화 필요</li> </ul>

[표 3.1-1] 계속

평가 분야 및 항목	환경보전목표(평가지표) 설정	설정 사유
II. 입지의 타당성		
가. 자연환경의 보전		
2. 지형 및 생태축 보전	○가치가 높은 지형·지질의 보전 및 지형 변화 최소화	○자연성이 우수하고 학술적, 문화적, 지질학적으로 보전가치가 있는 지역 (천연기념물, 화석 등)의 보전 및 고려 평가 필요
	○생태축 보전	○생태적 건전성 확보를 위한 녹지축 보전 및 훼손지역의 연결 평가 필요
3. 자연경관	○경관 변화 최소화	○계획의 시행으로 인한 기존 자연 경관에의 영향 평가 필요 - 주요 조망점에서 조망의 대상이 되는 자연경관의 질적 저하 및 훼손의 가능성
4. 수환경 보전	○중권역별 물환경 목표기준 준수	○목표기준 준수 및 계획 시행으로 인한 수질 영향 최소화 필요
	○수질오염총량관리계획 부합	○수질오염총량관리계획 부합여부
	○물수지 분석	○유역 수자원의 유출·수요량 계산, 수리시설 규모 적정성 평가 필요
나. 생활환경의 안전성		
1. 환경기준 부합성	○환경기준의 유지	○환경기준 유지 및 계획시행으로 인한 대기질, 토양, 소음·진동 영향 최소화 필요
2. 환경기초시설의 적정성	○환경기초시설의 적정성	○계획시행으로 인한 환경기초시설의 적정성 평가 필요
3. 자원·에너지 순환의 효율성	○자원의 재활용	○폐기물 발생 억제 및 자원의 재활용 검토 필요
	○탄소중립	○온실가스 배출변화 및 온실가스 배출 저감방안 검토 필요
다. 사회·경제 환경과의 조화성		
1. 환경친화적 토지이용	○토지이용변화 최소화	○기본계획 검토, 시설물 계획 등 토지 이용상의 변화 최소화 ○자연환경보전 및 생활환경의 안전성에 대한 환경보전대책을 반영한 토지 이용계획 평가 필요

## 제4장 전략환경영향평가 평가항목 등의 결정내용

### 4.1 대상지역 설정

- 본 계획시행으로 인한 주변지역 환경에 영향이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을 대상으로 「환경영향평가서등 작성 등에 관한 규정, 환경부고시 제2023-72호」, 「환경영향평가서등의 작성 등에 관한 안내서, 2023.01, 환경부」, 「전략환경영향평가 업무매뉴얼, 2023.02, 환경부」, 「환경영향평가 평가범위 설정 가이드라인, 2013.01, 환경부」 등의 관련규정을 적용하여 각 평가항목별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을 설정함
- 계획수립 및 시행에 따른 자연환경의 보전, 생활환경의 안전성, 사회·경제 환경과의 조화성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범위는 계획의 특성, 주변 환경현황, 직·간접적인 영향권 및 장·단기적 영향을 고려하여 각 항목별로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 범위로 다음과 같이 설정함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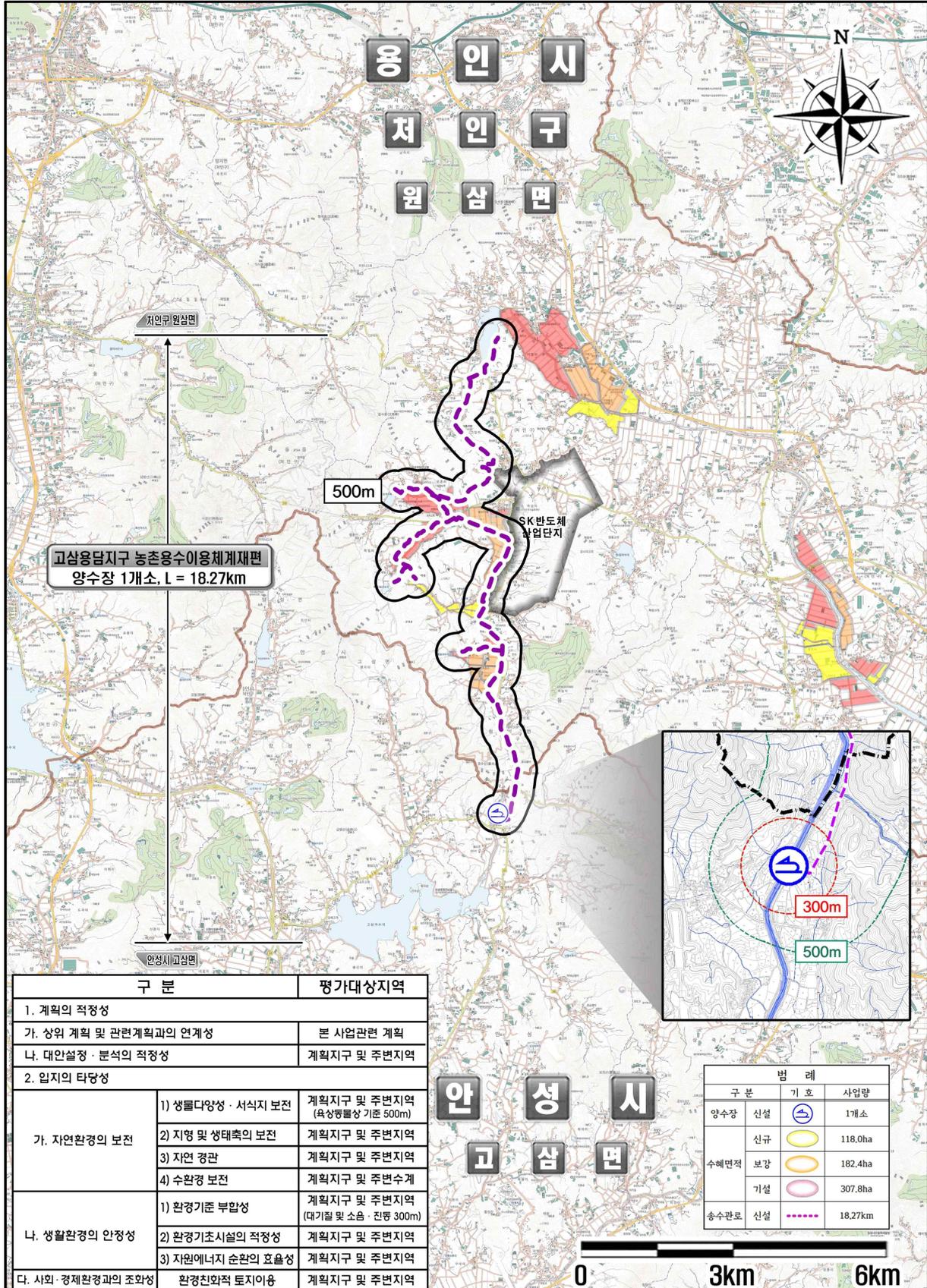
[표 4.2-1]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 설정

구 분	평가대상지역 설정근거 및 사유	평가 대상지역
I. 계획의 적정성		
가. 상위 계획 및 관련 계획과의 연계성	○ 상위 행정계획 및 다른 행정계획과의 부합여부 파악을 위한 광역범위 설정	○ 본 사업관련 계획
나. 대안 설정·분석의 적정성	○ 계획비교 등 대안별 비교·분석을 위한 광역범위 설정	○ 계획지구 및 주변지역 <sup>주)</sup>
II. 입지의 타당성		
가. 자연환경의 보전		
1. 생물다양성·서식지 보전	○ 육상 및 육수동물상에 영향이 예상되는 지역 ○ 환경관련 보호지역 등 자연환경자산의 변화가 예상되는 지역 ○ 「환경영향평가서등의 작성 등에 관한 안내서, 2023.01, 환경부」에 따른 분류군별 조사범위 고려	○ 계획지구 및 주변지역
2. 지형 및 생태축 보전	○ 계획시행으로 인한 지형·지질 변화 및 생태축 단절이 예상되는 지역	○ 계획지구 및 주변산계
3. 자연경관	○ 계획시행으로 인한 경관 변화가 예상되는 지역	○ 계획지구 및 주변지역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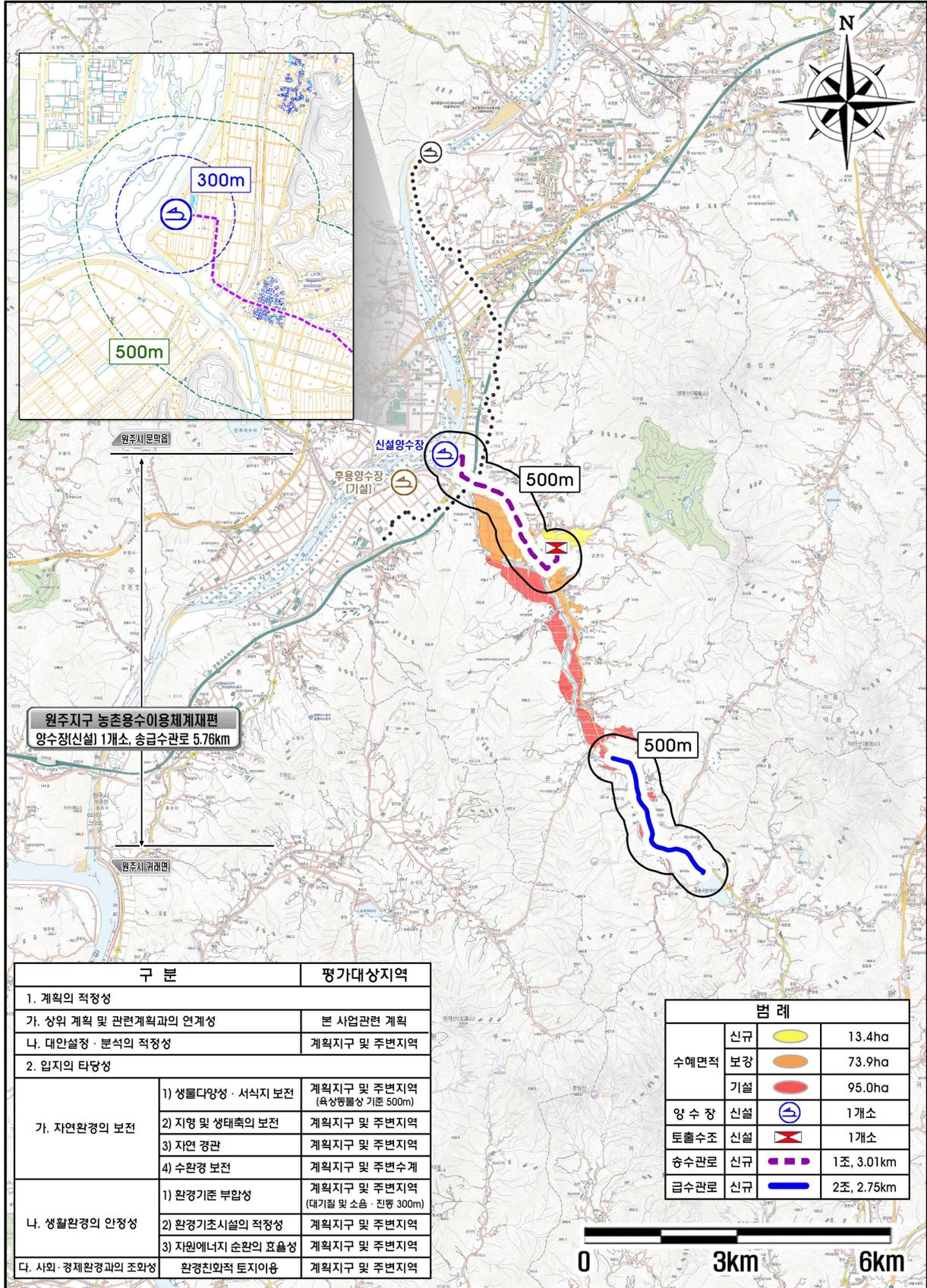
[표 4.2-1] 계속

구 분	평가대상지역 설정근거 및 사유	평가 대상지역
4. 수환경 보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계획지구 주변 각종 수환경 관련 보호지역에 직·간접적 영향이 예상되는 지역</li> <li>○ 계획시행으로 인해 하류수계 수질변화가 예상되는 지역</li> <li>○ 수리·수문 변화가 예상되는 지역</li> </ul>	○ 계획지구 및 주변수계
나. 생활환경의 안전성		
1. 환경기준 부합성	○ 계획시행으로 인한 기상, 대기질, 토양, 소음·진동 영향이 예상되는 지역	○ 계획지구 및 주변지역 - 대기질 및 소음·진동 300m 이내
2. 환경기초시설의 적정성	○ 환경기초시설의 현황 파악, 규모의 적정성 검토	○ 계획지구 및 해당 지자체
3. 자원·에너지 순환의 효율성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계획시행으로 폐자원 발생 및 지자체 처리계획 검토</li> <li>○ 계획시행으로 온실가스 배출 변화가 예상되는 지역 및 지자체 온실가스 감축 계획 등</li> </ul>	○ 계획지구 및 해당 지자체
다. 사회·경제 환경과의 조화성		
1. 환경친화적 토지이용	○ 계획시행으로 인한 토지이용 변화가 예상되는 지역, 수혜 지역, 입지제한사항 검토	○ 계획지구 및 주변지역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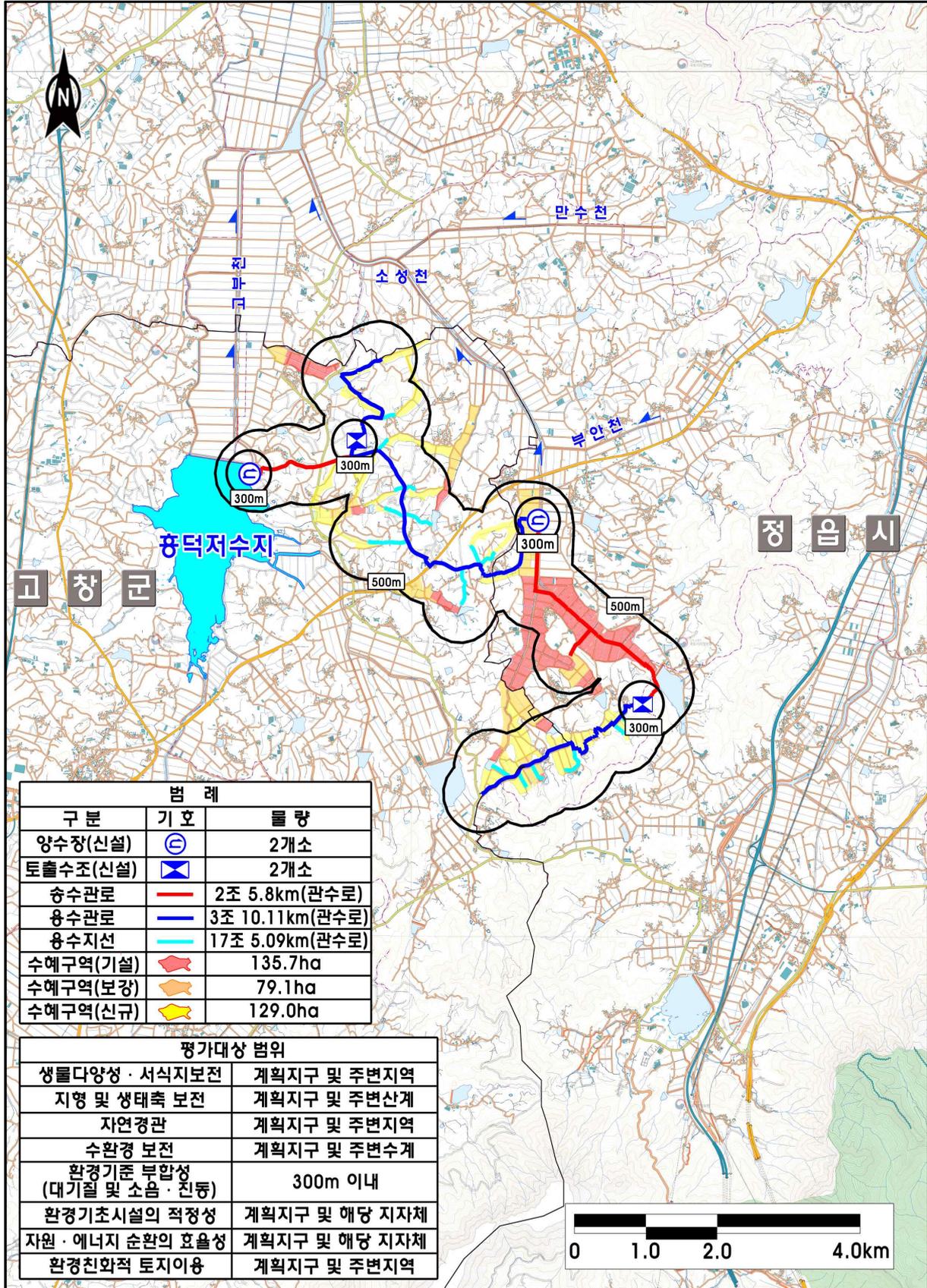
주) 동·식물상 대상지역 범위 : 계획지구(송수관로 등 선형지역 포함) 경계로부터 육상식물상 300m, 육상동물상 300~500m, 육수동물상 계획지구 인접 수계로 설정함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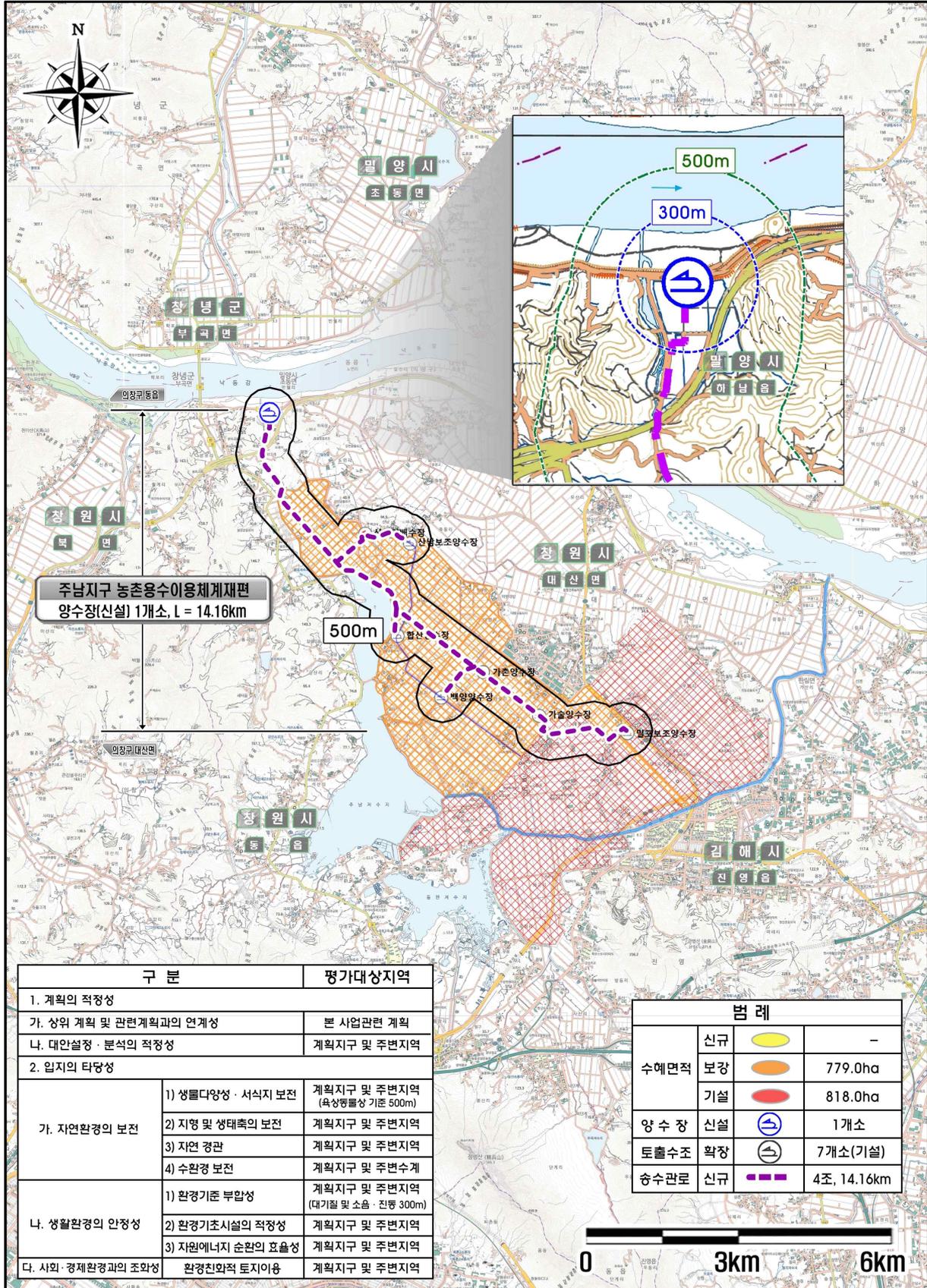
(그림 3.2-1)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 설정도(고삼용담지구)



(그림 3.2-2)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 설정도(원주지구)



(그림 3.2-3)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 설정도(애당지구)



(그림 3.2-4)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 설정도(주남지구)

## 4.2 대안 설정

- 본 계획에 대한 대안은 「환경영향평가서등 작성 등에 관한 규정(환경부고시 제2023-72호)」 및 「전략환경영향평가 업무 매뉴얼, 2023.02, 환경부」 등에 제시된 개발기본계획의 대안의 종류 및 선정방법을 적용하였으며, 대안의 종류는 계획 비교, 수단·방법, 수요·공급, 시기·순서, 입지, 기타 등이 있음
- 대안은 계획의 성격 및 내용, 평가대상지역 및 주변지역의 환경적 특성, 예상되는 환경 이슈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계획 비교, 수단·방법, 입지에 따른 대안을 선정함

[표 4.2-1] 대안의 종류 및 선정

대안종류	대안 선정사유	선 정
계획 비교	○ 계획을 수립하지 않았을 경우 발생 가능한 상황(No Action)과 계획을 수립했을 때 발생 가능한 상황(Action)을 비교하여 계획의 적정성 검토 필요	○
수단·방법	○ 계획의 목적 달성을 위해 설치되는 양수장, 송수관로 등을 대안별로 비교 필요	○
수요·공급	○ 10년 빈도 이상의 가뭄 상습지역 중 수해면적이 50만 제곱미터 이상인 농업진흥 지역을 우선 대상으로 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 수요 대비 공급 규모의 적정성을 검토하는 계획이 아님	-
시기·순서	○ 가뭄 상습지역에 양수장 및 송수관로 등 수리시설을 설치하여 농어촌 지역에 농업·생활·환경용수 등을 확보·공급하는 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 시기 및 순서를 결정 하는 계획이 아님	-
입 지	○ 계획의 목적 달성을 위해 설치되는 양수장의 위치를 대안별로 비교하여 양수장 위치에 따른 송수관로의 연장 및 선형 등을 대안별로 비교 필요	○
기 타	○ 관계행정기관의 장이 별도 대안 제시 및 요구시 반영	-

[표 4.2-2] 대안의 평가방법

대안종류	대안선정방법 및 선정사유
계획 비교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토지이용 및 수자원 이용측면 비교</li> <li>○ 각종 보호지역에 미치는 영향 검토</li> <li>○ 생태계 훼손 가능성 및 자연경관에 미치는 영향</li> <li>○ 지형의 훼손 및 자연재해에 미치는 영향</li> <li>○ 쾌적한 생활환경 유지에 미치는 영향</li> <li>○ 환경기준의 유지 및 달성에 미치는 영향</li> </ul>
수단·방법	○ 양수장, 토출수조, 송수관로, 용수로 등 계획 수립시 수해지역의 용수확보 용이성, 환경 훼손 등을 고려한 대안 검토
입 지	○ 양수장, 토출수조, 송수관로, 용수로 등 입지에 따른 대안 검토

### 4.3 평가항목·범위·방법 등의 설정

#### 4.3.1 전략환경영향평가 평가항목의 선정

- 본 계획의 특성을 고려하여 환경에 영향이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항목을 대상으로 평가항목으로 선정함

[표 4.3-1] 평가항목 선정

평가분야 및 평가항목		평가항목의 설정			
		중점 평가	현황 조사	제외 항목	사 유
I. 계획의 적정성					
가. 상위 계획 및 관련계획과의 연계성		○	-	-	○ 상위 행정계획 및 다른 행정계획과의 부합 여부 파악 필요
나. 대안설정·분석의 적정성		○	-	-	○ 계획 비교 등 대안별 비교·분석 필요
II. 입지의 타당성					
가. 자연환경의 보전	1) 생물다양성·서식지 보전	○	-	-	○ 각종 보호지역 영향 및 동·식물 서식지와 다양성 변화, 보호생물종 영향 평가 필요
	2) 지형 및 생태축 보전	○	-	-	○ 계획시행으로 인한 주요 산림축의 훼손, 지형 및 생태축 단절 여부 등 검토 필요
	3) 자연경관의 보전	○	-	-	○ 계획시행으로 계획지구 및 주변 경관 영향 평가 필요
	4) 수환경의 보전	○	-	-	○ 계획시행으로 인한 주변 수계 및 보호지역에 직·간접적 영향 평가 필요
나. 생활환경의 안전성	1) 환경기준 부합성	○	-	-	○ 국가, 지역 환경기준 등의 유지달성 평가 필요
	2) 환경기초시설의 적정성	○	-	-	○ 환경기초시설의 현황 파악 및 기초시설 공급 필요 여부 파악
	3) 자원·에너지 순환의 효율성	○	-	-	○ 계획시행으로 인한 폐기물 발생량, 자원 재활용 및 탄소 중립 평가 필요
다. 사회·경제 환경과의 조화성	1) 환경친화적 토지이용	○	-	-	○ 토지이용변화가 예상되는 지역, 수해지역, 입지 제한사항 검토 필요

4.3.2 현황조사 범위 및 방법

- 환경영향 평가항목 중 본 계획시행에 따른 영향을 비교·분석하기 위하여 현황조사가 필요한 항목을 선정하여 아래와 같이 현황조사계획을 수립함

[표 4.3-2] 평가항목별 현황조사 범위 및 방법

설정된 평가항목	현황조사 범위 및 방법				사 유	
	공간적 범위	내용적 범위	시간적 범위	조사 방법		
I. 계획의 적정성						
가. 상위 계획 및 관련계획과의 연계성	평가 대상 지역	[표 43-2] 참조	계획의 수립 기간	문헌조사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공간적 범위 : 계획지구 및 지자체</li> <li>○ 내용적 범위 : 작성규정 [별표4] 제2호에 따른 현황조사의 조사항목</li> <li>○ 시간적 범위 : 계획의 수립기간</li> <li>○ 조사방법 : 관련계획 문헌 구성</li> </ul>	
나. 대안설정·분석의 적정성	평가 대상 지역	대안별 평가 지표	계획의 수립 기간	문헌조사, 전문가 의견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공간적 범위 : 계획지구 및 주변지역</li> <li>○ 내용적 범위 : 대안 선정 항목</li> <li>○ 시간적 범위 : 대안 선정 기간</li> <li>○ 조사방법 : 관련계획 문헌 구성</li> </ul>	
II. 입지의 타당성						
가. 자연환경의 보전	1) 생물다양성· 서식지 보전	평가 대상 지역	[표 43-2] 참조	최근 10년간	국가DB, 문헌조사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공간적 범위 : 계획지구 및 주변지역 - ‘3장.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’ 참고</li> <li>○ 내용적 범위 : 작성규정 [별표4] 제2호에 따른 현황조사의 조사항목</li> <li>○ 시간적 범위 : 계획의 수립기간</li> <li>○ 조사방법 : 관련자료 문헌 구성, 계획지구 현황파악 - 면적지역(양수장 등) : 현지조사 - 선형지역(송수관로 등) : 문헌조사</li> </ul>
			육상· 수생태계 (법정 보호종), 동계조류 조사	총 2회	현지조사 (탐문조사 포함)	
	2) 지형 및 생태축 보전	평가 대상 지역	[표 43-2] 참조	최근 5년간	문헌조사	
			-	현지조사		

[표 4.3-2] 계속

설정된 평가항목		현황조사 범위 및 방법				사 유
		공간적 범위	내용적 범위	시간적 범위	조사 방법	
II. 입지의 타당성						
가. 자연환경의 보전	3) 자연경관의 보전	평가 대상 지역	[표 43-2] 참조	계획의 수립 기간	문헌조사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공간적 범위 : 계획지구 및 지자체</li> <li>○ 내용적 범위 : 작성규정 [별표4] 제2호에 따른 현황조사의 조사항목</li> <li>○ 시간적 범위 : 계획의 수립기간</li> <li>○ 조사방법 : 관련자료 문헌 구성, 계획지구 현황과악</li> </ul>
	4) 수환경의 보전	평가 대상 지역	[표 43-2] 참조	계획의 수립 기간	문헌조사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공간적 범위 : 계획지구 및 주변수계</li> <li>○ 내용적 범위 : 작성규정 [별표4] 제2호에 따른 현황조사의 조사항목</li> <li>○ 시간적 범위 : 계획의 수립기간</li> <li>○ 조사방법 : 관련자료 문헌 구성, 계획지구 주변 수계 현황과악</li> </ul>
수질 환경기준 항목			총 1회	현지조사		
나. 생활환경의 안전성	1) 환경기준 부합성	평가 대상 지역	[표 43-2] 참조	계획의 수립 기간	문헌조사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공간적 범위 : 계획지구 및 주변지역 - 대기질, 소음·진동 0.3km 이내</li> <li>○ 내용적 범위 : 작성규정 [별표4] 제2호에 따른 현황조사의 조사항목</li> <li>○ 시간적 범위 : 계획의 수립기간</li> <li>○ 조사방법 : 관련자료 문헌 구성, 계획지구 현황과악</li> </ul>
			대기질, 토양, 소음·진동 환경기준 항목	총 1회	현지조사	
	2) 환경기초 시설의 적정성	평가 대상 지역	[표 43-2] 참조	계획의 수립 기간	문헌조사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공간적 범위 : 계획지구 및 주변지역</li> <li>○ 내용적 범위 : 작성규정 [별표4] 제2호에 따른 현황조사의 조사항목</li> <li>○ 시간적 범위 : 계획의 수립기간</li> <li>○ 조사방법 : 관련자료 문헌 구성</li> </ul>
3) 자원·에너지 순환의 효율성	평가 대상 지역	[표 43-2] 참조	계획의 수립 기간	문헌조사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공간적 범위 : 계획지구 및 주변지역</li> <li>○ 내용적 범위 : 작성규정 [별표4] 제2호에 따른 현황조사의 조사항목</li> <li>○ 시간적 범위 : 계획의 수립기간</li> <li>○ 조사방법 : 관련자료 문헌 구성</li> </ul>	
다. 사회·경제 환경과의 조화성	1) 환경친화적 토지이용	평가 대상 지역	[표 43-2] 참조	계획의 수립 기간	문헌조사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공간적 범위 : 계획지구 및 주변지역</li> <li>○ 내용적 범위 : 작성규정 [별표4] 제2호에 따른 현황조사의 조사항목</li> <li>○ 시간적 범위 : 계획의 수립기간</li> <li>○ 조사방법 : 관련자료 문헌 구성</li> </ul>

[표 4.3-3] 평가항목별 현황조사 항목

평가분야 및 평가항목		현황조사 항목
I. 계획의 적정성		
가. 상위 계획 및 관련계획과의 연계성	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농어촌정비 관련 계획</li> <li>- 국토종합계획</li> <li>- 농어촌융수이용 합리화 계획, 농업·농촌 및 식품 산업 발전계획</li> <li>- 국가환경종합계획, 시·군환경계획, 가뭄종합대책 등</li> </ul>
나. 대안설정·분석의 적정성		○ 대안의 종류, 설정된 각 대안 종류별 시나리오 구성, 최종 대안 평가에 필요한 요소 또는 지표 등
II. 입지의 타당성		
가. 자연환경의 보전	1) 생물다양성· 서식지 보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국가DB</li> <li>- 생태계우수등급지역, 생태자연도 1등급권역, 식생보전등급, 국토환경성 평가지도 1·2등급 지역 등</li> <li>○ 문헌조사</li> <li>- 생물종 및 생물다양성 보호지역 : 생태·경관보전지역, 야생생물보호구역, 습지보호지역 등</li> <li>- 육상생태계 : 일반 생물종(동·식물상) 분포 및 서식 현황, 법정보호종 등 주요 생물종의 분포 및 서식 현황              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· 법정보호종(멸종위기 야생생물 등), 특정군락, 천연기념물, 희귀종 서식지, 철새도래지 등</li> </ul> </li> <li>- 수생태계 : 일반 생물종(동·식물상) 분포 및 서식 현황, 법정보호종 등 주요 생물종의 분포 및 서식현황</li> <li>○ 현지(탐문조사 포함) 조사</li> <li>- 육상·수생태계 : 일반 생물종(동·식물상) 분포 및 서식 현황, 법정보호종 등 주요 생물종의 분포 및 서식현황</li> </ul>
	2) 지형 및 생태축 보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문헌조사</li> <li>- 지형 유형 : 산지, 구릉지, 하천, 해안 등</li> <li>- 특이한 지형 : 계곡, 협곡 등</li> <li>- 지형형상 : 표고, 경사도, 산줄기 등</li> <li>- 지반 : 지반 불안정지역, 연약지역, 연안침식 우려지역 등</li> <li>- 지형보전 등급</li> <li>- 학술적·문화적 또는 자연환경보전 가치가 있는 지형</li> <li>- 능선·계곡 등 야생동물의 주요 이동로</li> <li>- 국가 핵심생태축 : 4대 핵심 생태축 중 도서연안, 5대강 수생태축 등</li> <li>- 광역생태축</li> <li>- 도시연결 생태축 : 도시·군기본계획 상의 보전축</li> <li>- 백두대간, 정맥 및 지맥 등의 산림축</li> <li>- 도시·생활공간 생태축, 주요 산림 생태축, 수변생태축</li> <li>○ 현지조사</li> <li>- 지형 형상 : 표고, 경사도, 산줄기 등</li> <li>- 지반 : 지반 불안정지역, 연약지역 등</li> <li>- 학술적·문화적 또는 자연환경보전 가치가 있는 지형</li> <li>- 능선·계곡 등 야생동물의 주요 이동로</li> </ul>

[표 4.3-3] 계속

평가분야 및 평가항목		현황조사 항목
II. 입지의 타당성		
가. 자연환경의 보전	3) 자연경관의 보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문헌조사              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자연경관 보전 용도지역 : 생태경관 보전지역, 자연·수변경관지구 등</li> <li>- 경관적 보전가치가 높은 지역 : 하천, 계곡, 호소 등</li> <li>- 스카이라인과 스카이라인에 영향을 미치는 시설</li> <li>- 주요경관 자원 : 경승지, 폭포, 랜드마크(대표·상징경관), 기암석, 사적, 사구, 역사·문화 자원 등</li> </ul> </li> <li>○ 현지조사              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주요 조망점(도로, 등산로, 전망대, 시가지 등) 및 조망상황</li> <li>- 스카이라인과 스카이라인에 영향을 미치는 시설</li> </ul> </li> </ul>
	4) 수환경의 보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문헌조사              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현황 : 수계 및 저수지, 지하수 이용, 환경기초시설, 수질오염총량관리, 비점오염원</li> <li>- 물환경 보호지역 : 상수원 보호구역, 수변구역, 농어촌 용수보호구역, 해양보호구역 등</li> </ul> </li> <li>○ 현지조사              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수계 및 지표수질 현황</li> </ul> </li> </ul>
나. 생활환경의 안전성	1) 환경기준 부합성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국가DB              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기상 현황</li> </ul> </li> <li>○ 문헌조사              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대기질 등의 국가·지역 환경기준 및 현황</li> <li>- 환경기준 유지달성을 위해 국가 등이 설정한 환경목표기준 및 현황</li> <li>- 환경오염 심화지역 또는 환경오염 심화 예상 지역 등</li> </ul> </li> <li>○ 현지조사              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정온시설 및 대기질, 토양, 소음·진동 현황 조사</li> </ul> </li> </ul>
	2) 환경기초 시설의 적정성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문헌조사              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환경기초시설 현황</li> <li>- 기초시설 공급여부 파악 등</li> </ul> </li> </ul>
	3) 자원·에너지 순환의 효율성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문헌조사              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폐기물 발생량 및 폐자원 등의 재활용 계획</li> <li>- 저탄소 장비 및 자재 사용 등 자원·에너지 순환계획</li> </ul> </li> </ul>
다. 사회·경제 환경과의 조화성	1) 환경친화적 토지이용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문헌조사              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각 평가항목별 환경보전대책 중 토지이용계획안에 반영된 내용</li> </ul> </li> </ul>

4.3.3 평가 범위 및 방법

○ 본 계획의 평가 범위 및 방법은 다음과 같음

[표 4.3-4] 평가방법 설정

평가분야 및 평가항목	환경보전목표	평가항목의 설정 및 사유
I. 계획의 적정성		
가. 상위 계획 및 관련계획과의 연계성	○ 상위·관련 계획과의 부합성 - 제5차 국토종합계획, 농어촌용수 이용 합리화 계획, 농업·농촌 및 식품 산업 발전계획, 제5차 국가 환경종합계획, 시·군 환경계획, 가물종합대책 등	○ 농어촌용수이용 합리화계획(농어촌 정비법)과의 부합성 및 연계성 검토 ○ 관련 상위 계획 및 관련계획과의 부합성 평가
나. 대안설정·분석의 적정성	○ 대안 설정 및 검토 - 계획 비교, 수단·방법 비교, 입지 비교	○ 자연·생활환경의 보전, 환경정책 계획과의 부합성, 용수확보의 용이성 등 대안 평가 ○ 기본계획 자료 통합 분석
II. 입지의 타당성		
가. 자연환경의 보전	1) 생물다양성· 서식지 보전	○ 중요 생물종 보전 ○ 생물 다양성 우수지역 보전 ○ 생태자연도 1등급권역 보전
	2) 지형 및 생태축 보전	○ 가치가 높은 지형·지질의 보전 및 지형변화 최소화 ○ 생태축 보전
	3) 자연경관의 보전	○ 경관변화 최소화
	4) 수환경의 보전	○ 중권역별 물환경 목표기준 준수 ○ 수질오염총량관리계획 부합 ○ 물수지 분석
나. 생활환경의 안전성	1) 환경기준 부합성	○ 환경기준의 유지 ○ 공사장비 투입 최소화
	2) 환경기초 시설의 적정성	○ 환경기초시설의 적정성
	3) 자원·에너지 순환의 효율성	○ 자원의 재이용 ○ 탄소중립
다. 사회·경제 환경과의 조화성	1) 환경친화적 토지이용	○ 토지이용변화 최소화
		○ 계획수립 전·후의 토지이용 변화 파악

4.3.4 항목별 현황조사계획

- 계획지구 및 주변지역의 환경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현지조사와 문헌조사를 병행하여 실시토록 조사계획을 수립함

가. 현지조사

- 계획지구 및 주변지역의 현지조사 평가항목별 조사계획은 다음과 같이 수립함

[표 4.3-5] 평가항목 조사계획(현지조사)

구 분		조 사 항 목	조사지점	조사횟수
동·식물상	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식물상 및 식생</li> <li>○ 육상동물상(포유류, 조류, 양서·파충류, 육상 곤충류)</li> <li>○ 육수동·식물상(어류, 저서성대형무척추동물)</li> <li>○ 생태·자연도 1등급권역, 식생보전 2등급 이상 지역, 하천, 호소 등 생태적 보전가치가 높은 지역이 포함되거나 훼손 가능성 여부 분석</li> <li>○ 멸종위기 야생생물, 주요 철새도래지 등 각종 보호 야생동·식물의 서식공간 분석</li> </ul>	계획지구 및 주변지역	총 2회
환경질	대기질	○ (6개 항목) PM-10, PM-2.5, NO <sub>2</sub> , CO, O <sub>3</sub> , SO <sub>2</sub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고삼용담지구 : 3지점</li> <li>○ 원주지구 : 3지점</li> <li>○ 애당지구 : 3지점</li> <li>○ 주남지구 : 3지점</li> </ul>	1회
	지표수질	○ (20개 항목) 수온, pH, DO, BOD, COD, TOC, SS, T-P, Chl-a, 총대장균군, Cd, As, CN, Hg, 유기인, PCBs, Pb, Cr <sup>6+</sup> , PCE, EC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고삼용담지구 : 2지점</li> <li>○ 원주지구 : 3지점</li> <li>○ 애당지구 : 3지점</li> <li>○ 주남지구 : 2지점</li> </ul>	1회
	토양	○ (15개 항목) Cd, Cu, As, Hg, Pb, Cr <sup>6+</sup> , Zn, Ni, F, 유기인화합물, PCBs, CN, 페놀, BTEX, TPH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고삼용담지구 : 2지점</li> <li>○ 원주지구 : 3지점</li> <li>○ 애당지구 : 2지점</li> <li>○ 주남지구 : 1지점</li> </ul>	1회
	소음·진동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등가소음도(주간 4회, 야간 2회)</li> <li>○ 진동레벨(주간 2회, 야간 1회)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고삼용담지구 : 3지점</li> <li>○ 원주지구 : 4지점</li> <li>○ 애당지구 : 4지점</li> <li>○ 주남지구 : 3지점</li> </ul>	1회

나. 문헌조사

- 계획지구 및 주변지역의 자료조사는 국가DB, 공간정보, 유사사례 조사, 주변 개발 사업 및 계획된 사업의 해당 환경영향평가 등의 자료를 인용할 계획임

## 4.4 주민 등에 대한 의견수렴계획

### 4.4.1 주민 등의 의견수렴 절차

구분	주요 내용	환경영향평가법 조항
행정계획의 구상		
↓		
전략환경영향평가 평가준비서 작성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다음 사항을 수록하여 평가준비서 작성              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의 목적 및 개요</li> <li>- 평가대상지역 설정, 지역개황, 평가항목, 범위, 방법 설정</li> <li>- 주민의견 수렴 방안</li> </ul> </li> </ul>	시행규칙 제2조
↓		
환경영향평가협의회 구성·운영(Scoping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기능 : 평가항목·범위·방법 등 결정</li> <li>○ 심의방법 : 회의/서면(회의시 과반수 출석 및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)</li> <li>○ 심의기간 : 최대 30일(평가준비서 보완기간, 토요일, 공휴일 제외)</li> </ul>	법 제8,11조 시행령 제4,5,9조
↓		
환경영향평가협의회 운영(Scoping) 결과 공개, <b>주민의견 수렴</b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평가항목이 결정된 날부터 20일 이내</li> <li>○ 계획수립행정기관 홈페이지 및 환경영향평가정보지원시스템에 14일 이상 공개</li> <li>○ 주민 등이 의견제출시 평가서 초안에 그 내용 수록</li> </ul>	법 제11조 시행령 제10조
↓		
전략환경영향평가서(초안) 작성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협의회 심의의견을 반영하여 전략환경영향평가서(초안) 작성              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결정된 전략환경영향평가항목 등 반영</li> </ul> </li> <li>○ 공개된 전략환경영향평가항목 등에 대하여 주민 등이 의견을 제출한 경우 초안에 반영</li> </ul>	법 제12조 시행령 제11조
↓		
전략환경영향평가서(초안) <b>공고·공람, 설명회, 관계행정기관 협의</b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초안에 대한 관계기관(협의기관, 승인기관, 관할 도지사, 관할지역 군수)의 의견을 들어야 함 : 의견제출기한 접수일부 30일 이내</li> <li>○ 초안 제출 10일 이내 일간신문 및 지역신문 공고(공람기간 20-40일 (공휴일 및 토요일 제외)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공고·공람내용, 초안요약문 : 계획수립행정기관 홈페이지 및 환경영향평가정보지원시스템에 게시</li> </ul> </li> <li>○ 설명회 개최(초안의 공람기간 내) : 설명회 개최 7일전까지 일간신문 및 지역신문 공고</li> </ul>	법 제12,13,14조 시행령 제12,13,15조
↓		
<b>주민의견 반영여부 공개</b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의견수렴 결과/반영여부를 개발기본계획 확정이전에 계획수립 행정기관 홈페이지 및 환경영향평가정보지원시스템에 14일 이상 공개</li> </ul>	법 제13조 시행령 제19조
↓		
전략환경영향평가서 작성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시행령 제21조제1항 내용 반영</li> </ul>	법 제16조 시행령 제21조
↓		
협의를요청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관계행정기관 → 협의기관</li> <li>○ 필요시 보완서 작성(보완은 최대 2회까지만 가능)</li> </ul>	법 제16,17조 시행령 제22,23,24조
↓		
협의의견 통보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협의기관 → 관계행정기관</li> <li>○ 협의요청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통보              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부득이한 경우 40일</li> <li>- 보완에 걸린시간, 공휴일 및 토요일 제외</li> </ul> </li> </ul>	시행령 제25조
↓		
협의의견 조치결과 또는 조치계획 통보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관계행정기관 → 협의기관</li> <li>○ 조치계획을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 통보</li> </ul>	법 제19조 시행령 제26조

#### 4.4.2 주민 등의 의견수렴 방법

##### 가. 주민 설명회 및 공청회

###### 1) 의견수렴 근거

- 「환경영향평가법」 제13조, 같은법 시행령 제13조, 제15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조에 의거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을 공고·공람하고, 주민설명회를 실시하여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할 계획임

###### 2) 의견수렴 계획

###### 가)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 공고·공람

- 초안을 제출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일간신문과 지역신문에 각각 1회 이상 공고
- 공고 후 20일 이상 40일 이내의 범위에서 공람(공휴일, 토요일 제외)

###### 나) 공고 및 공람을 실시한다는 사실 등 게시

- 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하려는 행정기관(농림축산식품부)의 정보통신망
  - 공고 및 공람 내용과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 요약문 첨부
-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
  - 공고 및 공람 내용과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 첨부

###### 다) 설명회 개최

-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의 공람기간 내에 개최
  - 설명회 일시 및 장소 등의 세부 계획은 추후 해당 지자체와 협의하여 결정토록 할 계획임
- 설명회 개최 7일 전까지 일간신문과 지역신문에 사업개요, 설명회 일시 및 장소 등을 각각 1회 이상 공고

###### 라)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수렴

- 개발기본계획이 「환경영향평가법」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7조에 의거 자연환경보전지역, 자연공원, 습지보호지역, 특별대책지역에 해당하는 지역의 경우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 수렴이 필요
  - 고삼용담 등 4개 지구는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 수렴이 필요한 지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조사됨

마) 공청회 개최

- 주민이 공청회 개최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출하여 「환경영향평가법」 제13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조제1항에 따른 요건에 해당할 경우, 공청회를 개최토록 할 계획임

[표 4.4-1] 공청회 개최요건

환경영향평가법	<p><b>제13조(주민 등의 의견 수렴)</b></p> <p>① 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하려는 행정기관의 장은 개발기본계획에 대한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을 공고·공람하고 설명회를 개최하여 해당 평가 대상지역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. 다만,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의 주민이 공청회의 개최를 요구하면 공청회를 개최하여야 한다.</p>
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	<p><b>제16조(공청회의 개최 등)</b></p> <p>① 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하려는 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3조제1항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청회를 개최하여야 한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제14조에 따라 공청회 개최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출한 주민이 30명 이상인 경우</li> <li>2. 제14조에 따라 공청회 개최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출한 주민이 5명 이상이고,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한 의견을 제출한 주민 총수의 50퍼센트 이상인 경우</li> </ol>

나. 주민 등의 의견수렴 결과 공개 및 의견수렴

- 「환경영향평가법」 제13조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에 의거하여 주민 등의 의견수렴 결과와 반영 여부를 협의 요청 전에 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하려는 행정기관(농림축산식품부)의 정보통신망 및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에 14일 이상 게시할 계획임

[표 4.4-2] 의견수렴 결과 및 반영여부 공개

환경영향평가법	<p><b>제13조(주민 등의 의견 수렴)</b></p> <p>④ 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하려는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주민등의 의견수렴 결과와 반영 여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.</p>
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	<p><b>제19조(주민 등의 의견 수렴 결과 및 반영 여부 공개)</b></p> <p>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하려는 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3조제4항에 따라 주민 등의 의견수렴 결과와 반영 여부를 법 제16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서의 협의 요청 전에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을 관할하는 시·군·구 또는 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하려는 행정기관의 정보통신망 및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에 14일 이상 게시해야 한다.</p>